# 제363회국회 (임시회)

#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 일 시 2018년8월21일(화)
-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성별에 의한 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17. 성차별ㆍ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31. 2017회계연도 결산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상정된 안건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 ㆍ노웅래 ·문희상·윤후덕·유동수·김성수·김철민·김영호·강병원·박정·박경미·권미혁·이원욱·어 기구・김병기・이훈・신창현・정춘숙・정성호・서영교・유은혜・송옥주・소병훈 의원 발의) .......4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권은 희 · 김관영 · 김동철 ·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선 · 신용현 · 오세정 · 오신환 · 유승 민 · 유의동 · 이동섭 · 이언주 · 이찬열 · 이태규 · 이학재 · 이혜훈 · 정병국 · 정운천 · 주승용 · 지상 욱·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2145) .......4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권은 희 · 김관영 · 김동철 ·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선 · 신용현 · 오세정 · 오신환 · 유승 민·유의동·이동섭·이언주·이찬열·이태규·이학재·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권은 희 · 김관영 · 김동철 ·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선 · 신용현 · 오세정 · 오신환 · 유승 민 · 유의동 · 이동섭 · 이언주 · 이찬열 · 이태규 · 이학재 · 이혜훈 · 정병국 · 정운천 · 주승용 · 지상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 영·장정숙·김종회·최경환(평)·김경진·박지원·조배숙·박주현·김광수·이용주·천정배·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권은 희·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박주선·오세정·오신환·유승 민 · 유의동 · 이동섭 · 이언주 · 이찬열 · 이태규 · 이학재 · 이혜훈 · 정병국 · 정운천 · 주승용 · 지상 욱·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49) .......4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권은 희·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박주선·오세정·오신환·유승 민 · 유의동 · 이동섭 · 이언주 · 이찬열 · 이태규 · 이학재 · 이혜훈 · 정병국 · 정운천 · 주승용 · 지상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 혁・김경협・김두관・김상희・김철민・노웅래・문희상・박완주・설훈・손금주・손혜원・송기헌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신보 라・임이자・김성원・김승희・박인숙・이양수・최도자・성일종・신상진 의원 발의) .......5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강훈 식ㆍ이해찬ㆍ진선미ㆍ권미혁ㆍ인재근ㆍ유은혜ㆍ표창원ㆍ신창현ㆍ최인호 의원 발의) .......5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윤종 필・김승희・홍문표・함진규・권석창・이양수・김기선・김순례・박덕흠・하태경 의원 발의)…5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표창 원·신창현·김상희·남인순·정춘숙·기동민·신용현·양승조·송옥주 의원 발의) ......5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이용주 ・이용호・김종회・박주현・최경환(평)・김광수・장정숙・정춘숙・박선숙・장병완 의원 발의) ……5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윤후 덕・안호영・정춘숙・안규백・김병욱・조승래・김영호・백혜련・소병훈・인재근・김철민・신경

16.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최인호ㆍ진선미ㆍ심상정ㆍ이정미ㆍ소병훈ㆍ김상희ㆍ김종훈ㆍ김종대ㆍ권미혁 의원 발의) ………5 17.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기동민·권 미혁·백혜련·김현권·안호영·정춘숙·남인순·김두관·전혜숙·원혜영·설훈 의원 발의) ......5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신창혂・추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하태경・이 동섭·신용현·송옥주·김수민·최도자·정춘숙·권은희·오세정·남인순 의원 발의) ···········5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강병원·금 대섭ㆍ김병기ㆍ김현권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주현ㆍ설훈ㆍ신창현ㆍ양승조ㆍ유은혜ㆍ윤영일ㆍ이춘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곽상도・장석 춘ㆍ정유섭ㆍ김성원ㆍ최교일ㆍ김승희ㆍ신보라ㆍ윤재옥ㆍ신상진ㆍ한선교ㆍ경대수ㆍ정우택ㆍ이군현 ·김정훈·조경태·주광덕·이만희·권석창·이양수·안상수·성일종·김정재 의원 발의) ·········5 2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금태섭·김영호·이철희·신창 현·최도자·김삼화·강훈식·소병훈·김정우·김성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82) ··············5 2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영호·이철희·신창현·최도 2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성 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선 · 신용현 · 오세정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동 · 이동섭 · 이언 주 · 이찬열 · 이태규 · 이학재 · 이혜훈 · 정병국 · 정운천 · 주승용 · 지상욱 · 채이배 · 최도자 · 하태 2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최도자·박인숙·원유철·임이 2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정·이인영·권미혁·인재근 ·신창현·김삼화·윤관석·진선미·최인호·박주민·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82) ······5 2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철민·안규백·진선미·강창 일·유승희·유은혜·백혜련·설훈·안민석·신용현 의원 발의) .......... 2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김석기·유민봉·이학재·박인 숙·신상진·성일종·정갑윤·조훈현·김관영·이채익·장석춘 의원 발의) ······························6 2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이정미·진선미·김병기·표창 원·최인호·박홍근·이재정·홍의락·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81) ································6 30.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강훈식・이찬열・김종훈・김상희・이원욱 ·백혜련·서형수·기동민·박경미·김두관·조승래·이수혁·위성곤·양승조 의원 발의) ……6

(09시05분 개의)

**○위원장 전혜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은 오늘 국무회의 참석 관계로 늦게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장관을 대

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 중간에 이석한다는 점을 위원장이 간사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허용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 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1 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간사위원님들 간의 협 의가 되지 않아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이어서 2017회 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법률안과 결산에 대하여 일괄 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2017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 말씀 드리면 국회 결산 심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정부에서 집행함에 있어 회계의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그 과 정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살펴본 후 집행 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묻고 향후 2019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에 이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가 국가 재정 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결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정부의 재정 집행 결과를 확인하시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히 미투 상황과관련하여 정부의 예산 집행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결산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 헌·노웅래·문희상·윤후덕·유동수·김성 수·김철민·김영호·강병원·박정·박경 미·권미혁·이원욱·어기구·김병기·이 훈·신창현·정춘숙·정성호·서영교·유은 혜·송옥주·소병훈 의원 발의)
-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 화·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성식·김수 민·김중로·박선숙·박주선·신용현·오세 정·오신환·유승민·유의동·이동섭·이 언주·이찬열·이태규·이학재·이혜훈·

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2145)

-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 화·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성식·김수 민·김중로·박선숙·박주선·신용현·오세 정·오신환·유승민·유의동·이동섭·이언 주·이찬열·이태규·이학재·이혜훈·정병 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채이배·최도 자·하태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2153)
-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 화·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성식·김수 민·김중로·박선숙·박주선·신용현·오세 정·오신환·유승민·유의동·이동섭·이언 주·이찬열·이태규·이학재·이혜훈·정병 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채이배·최도 자·하태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32)
-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 홍·정동영·장정숙·김종회·최경환(평)· 김경진·박지원·조배숙·박주현·김광수· 이용주·천정배·윤영일·정인화·이상돈· 유성엽·장병완 의원 발의)
-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 현·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성 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박주선·오세 정·오신환·유승민·유의동·이동섭·이언 주·이찬열·이태규·이학재·이혜훈·정병 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채이배·최도 자·하태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49)
-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 현·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성 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박주선·오세 정·오신환·유승민·유의동·이동섭·이언 주·이찬열·이태규·이학재·이혜훈·정병 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채이배·최도 자·하태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73)
-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 승희·권미혁·김경협·김두관·김상희·김 철민·노웅래·문희상·박완주·설훈·손금

- 주 · 손혜원 · 송기헌 · 신창현 · 심기준 · 원혜 영·윤후덕·진선미·최운열 의원 발의)
-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 필·신보라·임이자·김성원·김승희·박인 숙・이양수・최도자・성일종・신상진 의원 발의)
-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 순·강훈식·이해찬·진선미·권미혁·인재 근 · 유은혜 · 표창원 · 신창현 · 최인호 의원 발의)
-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 보라 · 윤종필 · 김승희 · 홍문표 · 함진규 · 권 석창 · 이양수 · 김기선 · 김순례 · 박덕흠 · 하 태경 의원 발의)
-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 표창원·신창현·김상희·남인순·정춘숙·기 동민·신용현·양승조·송옥주 의원 발의)
-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 금주 · 이용주 · 이용호 · 김종회 · 박주현 · 최 경환(평)·김광수·장정숙·정춘숙·박선 숙·장병완 의원 발의)
-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 은혜 · 윤후덕 · 안호영 · 정춘숙 · 안규백 · 김 병육 · 조승래 · 김영호 · 백혜련 · 소병훈 · 인 재근 · 김철민 · 신경민 · 손혜원 · 송갑석 · 조 정식 의원 발의)
- 16.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남인순·최인호·진선미·심상정·이 정미·소병훈·김상희·김종훈·김종대· 권미혁 의원 발의)
- 17.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 희 · 기동민 · 권미혁 · 백혜련 · 김현권 · 안 호영 · 정춘숙 · 남인순 · 김두관 · 전혜숙 · 원혜영·설훈 의원 발의)
-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신창 현·추미애·윤관석·오제세·김정우·김

- 민기·김영진·김해영·정재호 의원 발의)
-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하태경 · 이동섭 · 신용현 · 송옥주 · 김수민 · 최도자 · 정춘숙 · 권은희 · 오세정 · 남인순 의원 발의)
-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 강병원 · 금태섭 · 김병기 · 김현권 · 박경미 · 박광온 · 박주현 · 설훈 · 신창현 · 양승조 · 유 은혜 · 윤영일 · 이춘석 · 이학영 · 정춘숙 의원 발의)
-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 곽상도・장석춘・정유섭・김성원・최교일・ 김승희 · 신보라 · 윤재옥 · 신상진 · 한선교 · 경대수 · 정우택 · 이군현 · 김정훈 · 조경태 · 주광덕 · 이만희 · 권석창 · 이양수 · 안상수 · 성일종ㆍ김정재 의원 발의)
- 2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금태섭·김영호·이철 희 · 신창현 · 최도자 · 김삼화 · 강훈식 · 소병 훈·김정우·김성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82)
- 2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영호·이철희·신창 현 · 최도자 · 김삼화 · 강훈식 · 소병훈 · 김정 우·김성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94)
- 2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 원 대표발의)(김삼화·권은희·김관영·김동 철 ·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 선 · 신용현 · 오세정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 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 재・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 욱·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 2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최도자·박인숙·원유 철 · 임이자 · 강길부 · 박덕흠 · 정유섭 · 유 민봉 · 송희경 의원 발의)
- **2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정・이인영・권미혁・ 인재근 · 신창현 · 김삼화 · 윤관석 · 진선 미ㆍ최인호ㆍ박주민ㆍ유승희 의원 발의)(의 안번호 12382)
- 2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

원 대표발의)(박경미·김철민·안규백·진선 미·강창일·유승희·유은혜·백혜련·설 훈·안민석·신용현 의원 발의)

- 2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 원 대표발의)(송희경·김석기·유민봉·이학 재·박인숙·신상진·성일종·정갑윤·조훈 현·김관영·이채익·장석춘 의원 발의)
- 2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이정미·진선미·김병기·표창원·최인호·박홍근·이재정·홍의락·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81)
- 30.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정춘숙·강훈식·이찬열·김종훈·김상희· 이원욱·백혜련·서형수·기동민·박경미· 김두관·조승래·이수혁·위성곤·양승조 의 원 발의)

(09시07분)

○위원장 전혜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 30항까지 2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신용현 위원 저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전혜숙** 이것 상정하고……
- ○**신용현 위원** 상정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상정하기 전에 필요합니까? ○신용현 위원 예, 바른미래당 신용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하반기 들어서 첫 번째 여성가족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자유한국당위원님들이 아직 안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상황이 어떤지 조금 논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상정하는 법안들이 미투 관련 법안을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있고 또 예산에 관련된 것들 보고도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혜숙** 간사님들 의논해 보십시오. 김 수민 간사님하고……

법안 상정은 상관없을 걸로 보입니다.

○**신용현 위원** 법안 상정도 계시는 데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원장 전혜숙 그러면 간사 간 합의를 할 때 까지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0분 회의중지) (09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신보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의원**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투 운동의 확산과 함께 사회 곳곳에 숨어 있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성범죄, 위력에 의한 성폭력 등 그간 은폐되어 있던 각종 성범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일상적인 성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성범죄가 오랜 시간 은폐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축소하고 은폐하고 방조 해 온 사람들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분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실 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범죄사 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현행법은 성폭력 예방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희롱 사건에 한정하고 있어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즉각적인 수사기관 신고,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

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가 법률개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 위원님들의 많은 관 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혜숙 신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송희경 의원님이 제안설명하기 전에 의 사일정 제2항부터 제30항까지 2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먼저 의사일정 28항 양성평등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송희 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의원 존경하는 전혜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양성평등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 범죄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 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성희롱 · 성폭력 범 죄를 근절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 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 가기관 및 공공기관 내의 고위직 인사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성희롱ㆍ성매매ㆍ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에 따르면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등 1만 7211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내 고위직 인사의 예방교 육 참여율은 7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의 보고 대상을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주 무부처로 확대해서 고위직 인사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 지를 헤아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 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혜숙** 송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정춘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의원** 존경하는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 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 폭력・ 살해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청 자료 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로 여성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디지털 폭력, 묻 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반면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 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 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 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어 제정안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혜숙** 정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나머지 법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 2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여성가족부 소관 29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먼저 1쪽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송기헌 의원안은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가 해당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 내 성폭력 피해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유사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비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2쪽은 생략하고 3쪽의 하단부 의안번호 12373 신용현 의원안은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등을 받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인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자기의 보호·감독 등을 받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바 법체계상 해당 법률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4쪽의 하단부 윤종필 의원안은 성폭력행위자에게 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정벌과 장래 유사행위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성폭력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피해자 보호 효과, 사회적 공감대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쪽 중간 부분의 신보라 의원안은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신고 및 조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사업주 등의 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처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6쪽은 생략하고 7쪽의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성차별과 성희롱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2차 피해 방지 등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이나 제정안 심사과정 에서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중 복되는 법 규정들에 대한 통합·조정 및 여성가 족부·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소관부 처 간 긴밀한 협의, 그밖에 민간으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거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11쪽은 생략하고 12쪽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그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하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은 여성폭력과 2차 피해의 용어를 정의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통계 구축,여성폭력 방지 중장기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시행,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지원의 기본적인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여성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 회롱 등 유형별로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에 따라 데이트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 호·지원에 한계가 있고 여성폭력 방지정책의 종 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실태조 사 및 통계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국가행동계획 의 수립·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은 타 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 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 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1차 질 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드린 1분 더 드리는 것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요약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장관님, 지금 성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 보다 저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바 로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 내용이라고 보고 있 는데요, 지금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김현아 위원 논란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직장 내에서 위력에 의 한 성폭력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사회적 인식 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판결 자체는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 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저는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서 만약에 안 전 지 사가 무죄라면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유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 판결 자체에 대해 서는 행정부 부처의 일원으로서 평가를 하기보다 는 2심과 3심을 저희들이 기다리겠습니다. 그러 나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입장은 본 래 소임인 피해자 지원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 니다. 그래서 계속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무료 법률 지원을 하는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장관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 피해자가 피해자 가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저희는 3심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피 해자,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이 겪고 있는 2차 피 해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어서 여성가족부의 입장 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신고자에 대해 서는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아마 지난 3월에 여가위 전체회 의에서 안 전 지사 성폭행 논란이 제기됐을 때 장관님께서 하신 발언을 보니까 '외국 추세로 볼 때 강간죄로 보는 게 맞다'이렇게 언급을 하셨 더라고요. 맞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강간죄로 보는 게 맞 다라는 것보다도 강간죄에 대한 지금의 해석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지금의 강간죄 적용 규정 을 좀 더 완화하고 확대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리고 1심 판결 이후에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하고 관련단체를 통해서 소송 등 지원에 최 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변함 이 없으신 거고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오늘 법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 급하신 것과 관련된 것들을 수반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여성가족부 자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정부 입법으로 준비하 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의원님들이 입법을 하시 거나 법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입법이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 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법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법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형량 부분이나…… 지금 여태까지 특히 디지털 성폭력이나 이 부분에서는 형량이 대단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혹은 교육부에서는 기존에 교육부의 엄격한 처벌 규정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사립학교법이나 교육 법을 개정하는 이런 문제는 컨트롤타워가 있는 범정부 추진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포인트가 약 간 잘못 맞춰져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지 금 모든 법률들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만 얘 기가 되고 있는데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은 처벌까지, 법을 인정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 장히 불합리하고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 전 지사 판결에도 보면 피해자의 진술 이 채택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신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과거에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아 동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하고 유사하 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숙한 여성이나 이런 피해 여성이 아동보다도 더 취급을 못받고 있거나 그와 같은 형태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 처벌 위주의 여러 가지 법을 발의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정부부처에서는 위력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법무부의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아니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보다는 특히 여성가족부장관께서 장관 이전에 한 여성으로서 먼저 더 앞장서서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래서 지금 비동의 간음죄 관련해서는 여가부도 젠더폭력 관련 법체계 개선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 구성요건 등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벌보다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처벌과 함께 성관련된 그런 피해에 대한 것들의 입증, 그것이 밝혀지고 처벌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장관님이더욱 더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숙**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오늘 상임위에서는 그동안 미루 어졌었던 미투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었습니다. 제2, 제3의 미투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 무려 29 건의 법안이 상정됐고 이것이 우리 사회가 한 단 계 전진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미투 관련 법안 상정을 앞두고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판결이 난 이후에 기사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장관님께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김수민 위원 주로 이삼십대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커뮤니티 안에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댓글이나 그런 것 있으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가장 제 가슴에 닿고 저를 정말 스스로 비판하게 한 것은 '여성은 국 ○김수민 위원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면 주로 이 삼십대 여성들이 굉장히 참담한 심정으로 댓글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비방인데요, '김지은이 안희정 수행비서를 계속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김지은은 안희정을 아이돌 바라보듯 했고 팬심과 존경심이 있었다, 모든 여성은 잠재적 무고 범죄자이다, 펜스룰을 남자들이 알아서 잘 지켜야 한다'라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성적 자기결정권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은 그동안 사실 여러 차례 에 걸쳐서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오용되어 왔 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사회가 개인에게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지 금 이 상임위장에서 던져야 하는 질문은 과연 그 권리가 얼마나 존중받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존중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여가위에서 현 재 개인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게 하는 어떤 구체적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체적인,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해서 연구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법리 오해나 사실 미진 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성희롱·성폭력 혹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잘못된 인식 같은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캠페인이나 토론회를 통해서 바로 이런 것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려가도록 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번 사건 관련해서 사실 그 책임이 입법부나 행정부에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 의원실에서 현재 이른바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음에도 간음한 경 우라면 강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 한 간음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향후에 저희 입 법부와 행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바 부디 오늘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장관님께서도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숙**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 장관님, 강원 원주 출신의 송기 헌 위원입니다.

오늘 안희정 전 지사 판결과 관련돼서 계속 얘 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행법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장관님은 생각하시나 요, 이 사건에 관련돼서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우선 현행법상으로 문 제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음에 대한 정의가 대단히 협소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 간에 대한 범위나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사실, 이 답은 위원님 얘기에서 조금 나가는 건데 법과 그 법의 실행 과정의 문제도 사실은 조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사회 인식을 바꿔 가 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송기헌 위원** 실제로 재판까지 가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어렵거든요. 여가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 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요. 판결의 당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 만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그거거든요. 왜냐 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강한 입증이 필요하 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거기까지 가는 게 굉 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 장애를 상정을 하고 서 그것을 넘어서서 이런 부분을 보호하려고 하 면 어떤 입법이 필요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에 대해서 여가부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비동의 간음이라는 것이 같은 그런 취지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동의 간음죄 를 하더라도 제일 어려운 것은 또 그거예요. '노' 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 자체가 있었 다,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실이 완전히 갈리면, 사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양 당사자의 진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그런 경우에도 여성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단순히 비동의 간음죄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범죄의 성 격상 굉장히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입증 방 법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가부가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만 비동의 간음 죄를 만든다든지……

강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형법도 이제 강간이라고 하지 말고 그 개념을 바 꾸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강간죄를 보더라도 계속,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는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 어야지만 강간죄가 인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 금은 그렇지 않지요. 일단 폭행이나 협박만 인정 이 되면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지요, 현재는.

그런데 그 자체도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체계에 관한 아 니면 사법적 이론에 관한 부분도 여가부에서 충 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 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에 대해서도 여가부에서 깊이 연구를 하시고 또 법무부하고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상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께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숙**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송옥주 위원 송희경 위원님……
- ○**위원장 전혜숙** 자유한국당 송희경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희경 위원** 저희 상임위에 송 씨가 많으셔 가지고······
- ○위원장 전혜숙 송 씨가 많네요.
- ○송희경 위원 장관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히 안희정 지사 무죄 판결 이후에 여성가 족부의 입장을 분명히 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들끼리 뭐가 있었을 거야, 안 그러고서야……'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는데 역시무죄 판결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굴욕적인 증언을 하지 않겠다, 또 제2의 김지은 씨는 아마 테이블로 다 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권 중에서도 여성인권이 특별히 중요하게, 짧은 역사지만 우리가 어젠다를 두고 다뤄 왔는데 그 여성인권 중에서도 힘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위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성범죄에 우리가 굴욕해야 되는 이런 참혹한 현실을 국가시스템이나 정부의 관리나 또 법적 테두리나 사회적인 인프라나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대응을 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느 천지에가서 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나, 너무 참담한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범죄는 이념 간에, 민족 간에 또 국가 간에, 어떤 성별을 넘어서 어떤 정치적으로 도 해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성범죄도 강간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강간, 성폭 행, 성추행, 굉장히 두고두고 치욕스러운 기억이 남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우리 정부가 좀 더 관리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도대체 무죄 판결이 과연 왜 이렇게 났을까 했더니 역사가 있습니다.

####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성범죄 무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 놓거나 녹음을 해 놓거나 아니면 할퀴고 뜯겨져 가지고 내가 반항했다거나 폭력을 심하게 받았다거나 이런 어떤 증거 제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의 죄를 단죄하거나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프를 보시면 무죄율이 일반 범죄 무죄율보다 굉장히 높다는 통계가 우리 사회 현상을 그냥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들끼리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그것 그냥 법적으로도 그렇게 나타 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범죄 범죄 처벌율이 일반 범죄보다 굉장히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이 두 가 지라고 저는 봅니다. 남녀 간에 무슨 일이 있었 을 때,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서 특히 성폭력에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의미하고 정치적인, 법적인 의미를 서로 달리한다는 것입 니다. 이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괴리를 좁 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의적인 성관계에 대한 새로운 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도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한 발짝 더 나아간 법안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때까지 미투를 외치고 힘겹게용기내서 얘기했던 우리의 여성인권을 지켜 주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치적 행위로 비춰지는 것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데……

장관님, 제가 아까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이 위력이라는 것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한 법안은 여가부에만 보고하지 말고 예방 차원에서 성폭력이나 성추행 이나 강간까지 성범죄에 관련된 것은 주무부처 장관께 반드시 보고를 해야, 관리 감독은 그쪽에 서 하거든요. 인사권도 비용권도 모든 것이 주무 부 장관께 있기 때문에 하자는 건데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방 차원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왜냐하면 처벌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면 예방이 될 거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그렇습니다. 동의 합니다.

○**송희경 위원** 주무부처 장관께 이걸 알리고 그 주무부처 관리를 다시 여성부장관이 하시는 겁니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송희경 위원 제가 제안한 법 외에도 타 개정 법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좀 놀란 것은 '여가부에 통보하자' 그다음에 '여가부나 또 가해 자, 사건 은폐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또 '여 가부가 현장점검을 나가자', 여가위에 소속됐던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 내신 게 있는데 제가 그 검토보고서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인권위나 외교부나 감사원이나 지자체 등 다수가 부정적인 거예요. 이런 검토보고서가 있는 상황에서 이 법 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여가부장관님이 좀 더. 이 런 무죄율이 낮거나 처벌이 약화되어서 가슴에 멍들어 있는 여성인권, 특별히 성범죄, 인권에 울 부짖는 우리 피해자들을 좀 돌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관님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희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숙**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송 위원님이 딱 한 분 남았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제가 여가위의 세 번째 송 씨가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입니다.

저는 양성평등 사회가 실질적이고 조속하게 정 착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의할까 합니다.

2017회계연도의 성인지 대상 사업을 보니까 총 42개 부처에 350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인 지 결산서를 좀 살펴봤더니 부처별 성과목표는 총 455개이고요. 이 중에 306개를 달성해서 지금 67.3%를 달성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저희 성인지 예산 도입된 지가 지금 8년 된 부분인 거 지요? 과거에 비해서 이 수치가 높은 건가요, 낮 은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 부분은……

○**송옥주 위원** 2012년에 보니까 71.1%고요. 해 마다 73%, 68.8%, 70.9%, 69% 그렇습니다. 그런 데 7년째 되는 상황인데 67.3%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목표달성률이 높아져야 되는 부 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 습니다.

그나마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총 39개 대상 사업의 60개 목표 중에 7개를 빼고 나머지는 달 성을 했습니다. 88.3%로 정부 평균에 비해서는 한 20% 좀 넘게 목표 달성을 하기는 했지만 사 실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 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

다.

지금 보니까 2015년과 2016년뿐만 아니라 2017 년에도 미달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 알 고 계세요. 장관님?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 ○송옥주 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주로 미달성되었습니다.

○송옥주 위원 청소년 관련된 사업도 있고요. 아동과 여성 안전 교육문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 니다. 이게 성인권 교육 수혜자 수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공기관의 성희롱과 성매매·성폭력·가 정폭력 예방교육 종사자의 참여율에 대한 부분인 데요 이 부분이 지금 3년 연속으로 저조한 부분 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것 이외에도 성과목표 미달성이 7개 분야가 있고 또 성인지 예산 관련 돼서도 성과목표가 부적절하다는 그런 부분들도 몇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제도가 8년이 된 부분이기는 한테 실질적으로 운 영되는 부분과 내용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혹시 여성가족부장관으 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우선 여성가족부를 제 외한 다른 성인지 결산사업에 대한 평가는 기재 부와 행안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지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인지 결산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런 낮은 달성률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성인지 결산을 정부 평가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소관 부처 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 대해 서 중간 점검을 하는 방안을 통해서 좀 달성이 미진한 경우에는 더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 도록 하는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아직 제안하신 것은 아닌 것이고 그냥 여가부 차원에서 지금 검토 중인 안인 건가 요, 그 부분이?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검토 중인데 앞으 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쭙

겠는데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서 지금 전국의 17개소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372명의 전문인력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의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소속된 컨설턴트가 자문들을 해 줘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성별영향평가나 양성평등 그리고 성인지에 관련된 부분에 아주 톡톡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조금 전에 국회사무처에서 한 보고에도 그렇고 이분들의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보수나 그런 부분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의 이런 컨설턴트하는 분들의 자문료를 보니까 상당히 액수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상당히 저가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소 계상되어 있는, 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뭔지, 이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제대로 된 역할과사례를 해 줘야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취지에 맞게 목적사업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한게 있으시거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짧게 답변 좀 듣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님, 사실 컨설팅 수당 단가가 몇 년째 동결되어 있고요. 사실 저 희가 매년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를 올 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 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거의 수년간 신청 을 했지만 올리지 못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게 지금 기재부에서 커트가 됐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송옥주 위원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 컨설턴트들에 대한 효과나 성과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되거나 강조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고 이와 관련해서 얘기하 자면 여성가족부의 센터나 이런 데 종사자들의 급여가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의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67%에서 7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인건비를 올리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오르겠지만 저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높은 비율로 오르지 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원과 도움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송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가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원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주인의식을 갖고성인지 교육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계속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지금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없고 초등학생부터시작해서 성인지 교육을 학급마다 계속 다 해야되는 거예요, 학년도마다. 중학교도 해야 되고 고등학교도 해야 되고 대학도 해야 되고,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여성가족부가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총괄부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강화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강제적으로 하고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한 판단도 다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그런 그림을 그려서 위원님들이 입법을 하는 데 도 좀 도움이 되고 해서, 명실상부하게 성인지 교육이 잘됐을 때는 성범죄율이 줄어듭니다. 그 리고 여성의 위상도 올라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서 여성가족부가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 지역에서 성 별영향평가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 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내년에 지역에 거점을 몇 군데 더 추가로 설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적 결산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예산 확보도 항상 일을 많이 해야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법무부 따로행안부 따로, 여성가족부 이야기 듣지도 않고 따로따로 각각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되며 어떻게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겠습

니까? 성범죄자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제대로 교 육을 안 시키면 굉장히, 여성가족부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에 자체의 목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이번 안희정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무죄 로 판결이 되면서 실은 이와 관련한 비슷한 유형 의 사건을 겪은 많은 피해 여성들의 침묵을 굉장 히 강요하게 만들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심각하게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여전히 신고를 꺼리거나 은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범죄 사건의 유형들이, 대체적으로 피해 여성들이 자신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특히나 여러 사건들이 판결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서 나도 그런 똑같은 당사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실은 신고나 이런 것들을 더 꺼리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범죄도 워낙 심각하고 한 것에 비해서 이런 판결 결과들이 피해 여성들에 게 미치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상당하다. 또 그 와 관련한 2차 피해가 더더욱 피해 여성들이 더 침묵하고 신고를 꺼리게 만들게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가족부가 2차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해서 더 최선의 노력을, 피해자 보호를 위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에 는 동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장관께서도 2차 피 해가 심각하고 그래서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제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안희정 전 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측 증 인들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그 부분들 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런 내용들 이 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의료기록이 다 드러나거나 혼인 경험과 같은 신 상정보가 드러난다거나 그다음에 피해자에게 모 든 뭔가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어떤 태도 의 보도들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재판 전면 비공개 요청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이 신청한 증인 에 대한 신문 등이 상당수 재판에서 공개가 되었 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피의자 측 의 어떤 일반적인 주장들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 도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 한 2차 피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에 대해서 우선 여가부가 뭔가 조치를 취한 게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김지은 씨에 대한 것 도 저희가 구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2차 피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으로 악의적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이 굉장 히 심각해서요. 저희가 우선 경찰에 저희들이 발 견하는 대로 바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제 경찰청장님도 뵈었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즉각적으로 조치 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요. 사실은 이런 악 의적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처벌 사례 들이 나온다면 저는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도된 기사에 대 한 댓글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허위사실 유포들이 있을 텐데 실은 보도 자체의 편향성이랄지 그리 고 피해자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식의 그런 보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에서 그에 관해서 6월에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보도수첩 같은 지침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 요. 장관님도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신보라 위원 그런데 6월에 언론사, 한국기자 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렇게 배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소책자 내용을 보면 범죄사실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피해자에게 문제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은 없는지, 피해자는 무기력하고 나약할 것이라는 편견 이런 것은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안 희정 전 지사 판결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피해 자는 운전비서에게 만실이 아님에도 호텔이 만실 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다른 곳에 숙박하도록 했

다', '썻고 오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의미를 넉넉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스스로가 벨트를 풀어서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위력 관계에 있지도 않은 운전기사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성적 주체성과 자존심을 갖춘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런 보도자료 내용도 재판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가부에서 발행한 보도지침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가이드라인을 발 표한 것 외에도 저희가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에 연구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미투 사건 이후에 일어난 언론에 의한 2차 피해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자료집을 지금 준비하 고 있습니다.

물론 이 토론회에는 여성커뮤니케이션 학자들 뿐 아니라 언론사에 있는 현직 여성 언론인들도 참여해서 같이 토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꾸 사례를 발표하면서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 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끈질긴 노력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외에 추가로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 보도수첩 같은 경우는 언론사를 상대로 배포를 하는 건데 실은 강제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여가부가 뭔가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 고 보도를 수정한다거나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 는 않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적극적인 대응이…… 그 냥 '보도수첩을 가이드라인으로 참고만 하세요' 하면 언론사가 참고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상영물 그렇게 요구를 해도 실은 듣지를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보도수첩을 그냥 발행한 것만으로 여가부가 만족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성 언론인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과 이런 문제제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 부분에 대한 감 수성을 높여 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은 캠페인, 지금 말씀드린 가이드라인, 그 외에 여성 커뮤니케이션학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판하는 그런 과정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정 요청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보라 위원** 시정조치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

그리고 아까 법무부 보도자료 같은 것, 정부부처에 대한 보도지침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서 정부부처도 이런 성범죄 관련한 보도를 할 때는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고 인지해서 보도자료를 낼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은 일본군위안부 우리 정부 공식 기림일이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전 시 성폭력 문제로 여성의 인권과 정의에 관한 문 제이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는 졸속적인 12·28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의 의견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법률에 의한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여서 결국은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하는 화해·치유재단을 세웠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제가 8월 14일 일본 군위안부 기림일에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은 방송사와 또 일반 국민들로부터 화해·치유재단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 박근혜정부의 그 잘못된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협의가 부정되고, 그것이 국제사회에서도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됐다면 이 재단은 마땅히 해산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굉 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이런, 정말 외교참사라고 불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첫 번 째 단계는 사실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에 있거 든요.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크게 변화된 상황이 없는 것같이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가 예비비 103억을 화해·치유재단에, 위로금과 관련된 부분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 화해·치유재 단이 103억 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한 달에 한 1900만 원 이상……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천 육칠백만 원이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이천 육칠백만 원 정도 지금 지 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이 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의, 해산해야 된다는 얘 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 한 여성가족부의 대응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일단 저희가 화해·치 유재단에 매달 지출하는 임대료를 3분의 1로 축 소할 것을 요구해서 그것은 3분의 1로 축소하도 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2600~2700만 원 정도의 돈이 매달 운영비로 지 출, 인건비 포함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 반환하기 위해 서 정부가 예비비로 출연한 10억 엔은 양성평등 기금으로 집어넣고 화해·치유재단으로는 들어가 지 않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 춘숙 위원님이 인터뷰하신 것이나 또 민주당이 공보실을 통해서 발표하신 이것은 저희가 잘 알 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관계기관과 논의를 하면 서 그 방향으로 향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춘숙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일본군위안부, 일본군성노예 피해 와 관련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날 여성가족부가 일본군위안부 연구

소를 설립하고 현판식을 했지요? 여성인권진흥원 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 루어진 일본군위안부 관련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 로 수집하고 또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출범한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를 역사에서 지웠던 행보와 다르게 이번 정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소를 설립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 다.

(전혜숙 위원장, 송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국립 일본군위안부 연구 소 및 역사관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냈고요. 이 보고서에서 연구소의 독립성ㆍ지속 성 ·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초 계획과 다르게 연구소 출범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고 산하기관에 위탁사업 형태로 설치하고 있지 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와 관련된, 연구와 관련 된 예산을 보면 국립 역사관·연구소 설립에 관 한…… 기록물 관리사업, 학술심포지엄, 교육자료 제작, 이러한 것들을 그동안에 전 정부에서는 끼 워 넣기 식으로 이 예산을 진행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 지 못하도록 했고,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박근혜정부는 아시는 대로 12 · 28 합의 이후에 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했던 일본군 위안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원사업도 백지 화시키고, 국회에서 정해준 예산도 쓰지 않은 이 러한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에 비춰 보면 연구소를 마련한 것은 굉장히 발전된 것이나 이것을 위탁사업의 형태로 한다면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애초에 목표했던 것들을 달성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가 지금 있습니 다.

그래서 이것이 전 정부의 그러한 잘못된 일본 군위안부 합의를 뛰어넘는 역사에 남는,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과 정의에 입각해서 이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기념사업 그리고 연구소 설립과 관련돼서 어떻게 독립성ㆍ지속 성 ·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된 내 용들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행계획을 의원실

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지금 말씀을 드릴까 요?

○정춘숙 위원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지금 현재는 양성평등 연구원이나 인권진흥원의 위탁사업으로 돼 있고 위안부 연구소 관련 법이 현재 계류 중입니다. 아직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 단은 이렇게 출범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특수법인 화해서 독립된 기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소규 모로 출범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들을 하 시는데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그 사이 나온 프 로젝트, 작년·재작년에 했던 프로젝트를 전부 검토해 보고 내린 결론은 규모의 문제보다는 콘 텐츠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 이 들어오면 바로 자료를 찾을 수 있거나 링크를 해서 찾을 수 있는 체계성과 중심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출범했습니다. 예산이나 법적인 지위 문제는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 다.

**○정춘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희경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유민봉 위원 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장관님 그리고 여성가족부 공무 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 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 감량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유민봉 위원 지금 현재 형법에서는 제10조 1 항·2항에서 심신장애인,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또는 미약한 경우에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감량하도록 되어 있는, 그 정도까지 법률상 감경이 되어 있는데, 형법 제53조지요? 지금 재판상 감경 부분을 아예삭제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소극적이라고 해

야 될지, 약간은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할지 그런 정도의 포지셔닝을 지금 계속 취해온 것 아닌가 싶은데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그 부분, 여성가족 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아동·청소년 대상에서 성폭력범죄의 경우 사건별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저는 법관의 양형 재량이나 재판의 독립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과 관련해서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괄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사법부의 입장하고 거의 비슷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의 인식으로 볼 때 사법부의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관계 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의 인식 내지는 정서에 뒤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하는, 본능에 가까운 것이지요. 그런 것까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계속 재량에 맡겨 두는 것보다는 하여튼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사법부보다는 좀 더전향적 · 진취적 입장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래서 이런 사법부의 결정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저희 여성가족부는 청 소년 보호나 지원에 더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일괄적으로 형량을 매겨서 하기보다는, 특히 저희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게학교 밖 청소년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경우에 어떻게 보호하고 이들을 사회에 환원하고직업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가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나 사법부의 판정과 여성가족부가 동일하게 가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여성가족부의 차원에서 이 부분은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과거에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어떤 범죄행위는 감량된다 이런 것을 그냥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음주나 약물 복용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도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감량이 아니라 형을 더 가중해

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국민 인식이 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 는 생각이 들었고요.

외국의 입법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음주나 약물 복용에 의한 범죄행위를 어떻게 보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외국의 입법사례는 저 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말씀 드리기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단지 한국의 경우에 여성가족부가 가지는 딜레 마는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빠른 속도 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부응 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해외 입법사례는 좀 더 연구해 보겠 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형법 제10조 심 신장애인, 그래서 사물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고 또는 미약한 경우는 그건 정말 소수자 보호 차원에서 입법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주나 약물 복 용은 본인의 선택을 잘못한 것에 따른 피해가 정 말 심각하기 때문에 심신장애인에 준하는 그런 규정을 이미 사실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은 또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그것을 하 지 않는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제53 조의 작량감경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의 정서와 상식 그리고 외국 입법례를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그래도 여성가족부가 보호해야 될, 지켜야 될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법무부 와는 아니면 사법부와는 좀 더 다른 전향적인 입 장을 취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바른미래당 신용현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지만 안 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8월 14일 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번 여가위 회의 때 최영미 시인에 대해서 고은 시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은 미투 운동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저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

선고는 사실은 어렵게 만들어진 미투운동에 잘못 하면 완전히 사망선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장관님께서 이 선고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 주신 것은 저는 굉장히 감 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거 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부정했고 또 업무상 위 력에 대한 판단을 너무나 엄격하고 협소하게 해 석했고 피해자의 위치나 심정, 상태에 대해서 간 과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 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부의 판 결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변화된 성의식을 좆아가지 못한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판결을 보면서 저 스스로가 굉 장히 많이 반성한 것이 이때 사법부 판단의, 이 런 판단의 빌미가 된 것이 입법 미비였습니다. 그동안에 미투운동이 있고 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련 법안을 내주셨고요. 130건 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1건도 처 리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오늘 29건의 법안이 상 정된 건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130여 건 중에 30건 정도가 여가위 법안 이면 나머지는 법사위나 다른 쪽의 법안이잖아 요? 이쪽에 대해서는 혹시 여가부 입장에서 다른 부처하고 협력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먼 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지금 저희 성희롱·성 폭력 추진 점검단과 범정부 협의회가 있어서 거 기에 여러 부처가 들어와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나 고용부나 다른 부처와 협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진 점 검단과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서 법과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단지 속도를 빨리 하면 여성 피해자들이 현 실감을 훨씬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노 력을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장관님 말씀하 신 것처럼 이번에 미투운동이 지속적으로 사느 냐, 그다음에 특히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피해자 들의 2차·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법안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가위 법안은 여가위에서 통과시 킬 수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른 쪽에 올라와 있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에 우리 여가위 위원들전체의 이름으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좋고 아니면 어떤 협조문도 좋고 이런 액션을 저희가 취해야 되지 않는가. 정부는 정부대로 범부처적인 협력을 빨리 하고 우리 국회에서도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들이많이 통과가 되어야, 국민들한테 주는 사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나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좌시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법안 상정 때 검토의견을 주셨습 니다. 그런데 교육계의 미투 운동에 대한 검토 내용을 주셨는데 사실은 대학 내 성추행·성희롱 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 연예인 출신 대학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들도 있고 그 외에 교수와 학생 사이 그다음에 선배와 후배 사이 이런수직적인 위계가 있으면서 성폭력을 당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직장에서의 성폭력과 같이 볼 수 있느냐, 이걸 위계에 의한 것으로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기관에서의 미투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을 발의했고 오늘 상정이 됐는데 대학 내에 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교육·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이런 것들을 냈는데요.

저는 학교도 일반 직장 못지않은,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위계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의 미투운동에 대한 법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또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태까지의 여가부의 폭력 예방교육을 보면 사실 은 '몇 퍼센트가 교육을 받았다'하는 그런 정량적인 지수로 성과를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공공기관 같은 데 90% 넘었고군대는 구십오륙 %가 됐는데도 이런 성폭력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교육 방법이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정에 맞는 콘텐츠를 제대로 개발하고 또 사실은 남녀 간에 성폭력에 대한 인식 차이가 굉 장히 크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남녀 간의 성 대 결로 번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정 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공공부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 이상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 문제는 고위직이, 예를 들면 장관님이 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했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직의 참여가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곳은 대학입니다. 대학생들도 참여 안 하고 교수들도 참여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조금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사 교육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간담회를 해 보면 청소년 페미니스트가 지금 학교에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는 커 밍아웃하고 일부는 무서워서, 협박 때문에 못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선생님의 반응이, 선생님이전혀 모르신다 하는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어서요 일단 본격적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대상별 맞춤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태 까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저희가 양성평 등진흥원에서 콘텐츠도 질적으로 높이고 대상별 교육 콘텐츠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효과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희경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용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법사위에…… 저희가 지금 상정해서 심의해서 통과시켜야 될,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현장의 실행을 위한 그런 법들, 특히 미투 관련한 성폭력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촉구 결의문이라든가 또 기자회견이라든가 여가위 입장에서의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말 씀은 지금 이석하셨지만 위원장님과 정춘숙 간사 님과 저와 또 김수민 간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제안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제 윤경 위원님이십니다.

### ○**제윤경 위원** 제윤경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 과 관련된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 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잠시 그 직전에 있었 던 다른 사건의 판결과 비교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바뀌었다면 과연 그런 판결이 있었을까라는 생각 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직전에 홍대 누드 크로키 남성 모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 실형이 판결됐지 요.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판결의 결과 가 과거 다른 판결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적정하 다, 굉장히 정의로웠다 이렇게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판결은 법률적인 것에 근거해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여성계에서 편파수 사를 논의하는 이유는 과거의 판결이, 특히 대부 분의 가해자가 남성이고 남성을 상대로 한 판결 이 그렇게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플 러스해서 신고하고 수사 과정에서 여성들의 겪는 엄청난 2차 피해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편파수 사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아직도 그런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문화나 멘탈리티와의 치열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고, 그 것은 변화돼야 되지만 변화의 속도가 대단히 늦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이 두 사건을 바라보면서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딸을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 그리고 여성 정치인으로서 이 두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행 법체계상으로 보 면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든가 그리고 강간에 대 해서 사법부가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을 하고 있 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신 보라 위원님께서 그동안 보도됐던, 2차 피해를 증폭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자극적인 보도 내 용들을 근거로 보면 객관적인 범죄 사실을 사법 부가 아주 냉정하고 엄밀하게 살피느라. 이런 모 든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사회적 파장이나 그리고 이 사건이 몰고 온 사회적 충격 이런 것 들을 다 배제한 채 그렇게 무죄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범이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의 경우 보도 내용도 보도 행태도 보면 사실 가 해자에 대해서 아주 집요할 정도로 여성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보도가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초범이고 지속적으로 사과를 했음에도 불 구하고 이렇게 실형이, 이전에는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의 결과, 판결이 나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때문에 결국 지금 많은 여 성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 들이 좌절감을 겪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있었 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한 발짝도 나아 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걷고 있구나' 이런 좌절감 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그 리고 또 여성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대응책 이런 것들을 조속히 마련해 주셨으 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지금 국비 지원을 받는 성폭력상담소 가 전국에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104개입니다.

**○제윤경 위원** 104개 정도 되나요?

지금 국비 지원을 신청하면 100% 다 국비 지 원이 이루어지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100%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해서 적절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104개 정도면 지금 사실 우리나 라에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정도나 횟수 그리고 또 피해 사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적절하 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104개 숫자가 적절하 냐보다는 종사자의 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 니다. 저는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도 아시겠지만 특히 노동시간이 주당 52시간 이 렇게 되면 2교대 하고 있던 쉼터도 사실 3교대로 바꿔야 될 상황이어서 절대적으로 인력은 부족하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이게 예산도 부족하고, 예산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지금 심사과정을 거쳐서 제한된 센터만 국비 지원을 받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제윤경 위원 그러면 예산을 늘리기 위한 그동 안의 여가부 노력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왜 이 렇게 예산이 제한적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산은 뭐 항상 저희는 범죄피해자기금, 법무부 소속 범피기금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늘리기에는, 특히 피해자 폭력 관련단체가 받고 있는데 한계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 처우가 대단히 낮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것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설득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님, 잠깐……

그렇지만 지금 예산은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 다, 처우를 포함해서.

○**제윤경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국비 지원 대상 심사과정을 저희가 좀 들여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내려가서 실제로 이런 센터들의 현황을 들여다봤더니 가정폭력상 담센터랑 성폭력상담센터랑 함께 운영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고 또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장 자비를 털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 다.

심사과정도 투명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심사 대상에서 국비 지원으로 통과된 센터의 경우에는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번 국비 지원이 되면 관리가 잘 되는지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또 이 심사과정도 왜 공개할 수 없는지, 객관적지표가 없는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심사과정 없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던 민간 차원의센터라면 국비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여가부의 노력들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담원 자격 기준이나 상담 공간 이런 것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취임 한 이후로 여성가족부 산하 센터에 대한 혁신 컨 설팅관을 만들어서, 일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 라 1년 내내 그것을 운영하면서 컨설팅을 해 가 고 평가를 하는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이런 요구나 필요성을 보다 적극 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희경**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윤종 필 위원님이십니다.

○**윤종필 위원** 장관님, 앞의 PPT 한번 봐 주십 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판결 난 후에 여가부 대변인 논평을 담아 봤습니다. 장관님께서도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장관님, 이 내용 중에 보면 '피해 자의 용기와 결단을 지지하겠다, 단체를 통해 소 송 지원하겠다'이런 표현이 1심 판결에 대한 유 감 표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제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부의 판결은 사법부의 판결로 저희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지원을 한시도 늦추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일단 본 위원은 대변인 성명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후에 위계에 의한 성폭행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점점 더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장관님, 우리 제윤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자 모델 몰카 촬영 사건의 가해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그렇게 선고됐습니다. 몰카 촬영이 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그것은 없지만 과연 이 행위가징역 10개월이라는 중형을 받을 만한 범죄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는 본 위 원의 생각입니다.

그동안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면 벌 금형이 72%였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5.3%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이 결국은 대규모 여성 집 회를 촉발시킨 계기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더군 다나 여가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 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탁현민 행정관과 언론사와의 소송 결과 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입장을 물었을 때 장관님께 서는 '공직에 있는 장관으로서 사법부 판단에 대 해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답변하 셨습니다.

여가부가 지난 3월 9일 날 정부의 저출산대책 이 여성을 인구정책의 대상이나 혹은 수단으로 다루었다면서 기본계획을 재편할 것을 보도자료 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처럼 정부 정책 이 여성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 나 사법부 판결이 편견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면 여가부는 당연히 수정을 요구하고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가부의 존재 이유라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송희경 간사, 전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민들은 여가부가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서 의사 표명하는 것은 여가부가 그만큼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 나 폭력적 행위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소속 장관이나 임용권자에게 징 계 등 필요한 조치를 여가부장관님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 신설과 관련해서 여가부장관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저는 찬성합니다. 동 의합니다.

○윤종필 위원 적극 저도 그게 통과됐으면 좋겠 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새일센터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새일센터는 가사·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 절된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추경 예산 23억 4700만 원을 포함해서 510억 6800만 원의 예산 중 95.9%인 489억 6100만 원을 집행 하고 21억 700만 원이 지금 불용으로 남아 있는 데 장관님,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이유로 편 성하는 긴급 예산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면밀한 준비나 계획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정말 긴급히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해서 국가 적인 손해를 보는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 다.

새일센터 실무자의 인력 배치나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 확대, 경력단절 예방사업 등을 이유로 추경을 받았는데 불용이 됐습니다.

새일센터 종사자 결원과 관련해서 '인건비 미 집행이나 집행잔액 등으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워서 불용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 는데 새일센터 근무자 이직률은 지난 5년간 평균 28%로 유사 기관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지 요? 열악한 근무여건이 주요 사유라고 생각되는 데, 지난해에도 지적했지만 새일센터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 르면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 · 임신 · 출산 · 육 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 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새일센터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삼사십대 이용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오륙십대 이상 여성들의 이용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2017년에 발표한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구직 경로'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가 족이나 친구를 통한 경로로 취업하는 경우가 52.7%입니다. 신문·TV·벽보·생활정보지 등이 15.7%, 새일센터를 통한 비중은 고작 1%였습니 다.

본 위원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새일센터 존재조 차 알지 못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 는데 장관님,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보시 는지요?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
- **○윤종필 위원** 1%입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새일센터 홍보 내역을 살펴보니까 5월에만 한 시적으로 몰아서 홍보를 하고 있었고요. 별도 홍 보 예산이 없고 일반 수용비 예산을 사용하기 때 문이라고 보여지는데,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적 절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 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더 적 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숙**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 장관님,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 관련해서 사회적 관심과 비난의 목소리가 아주 높은데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 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여성가족부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이런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있지요.

저는 일단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이 얼마 전에 발생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윤중천 건설업자 의 원주 별장 성폭력 사건 그리고 고 장자연 씨 가 죽음으로 고발했던 성폭력 의혹사건, 이 맥을 다 같이 한다고 보는데요.

우선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고 상대방은 위력을 가진 가해자들이지요. 여기에 대해서자신의 인격이나 명예나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 가면서 아무리 고발을 해도 경찰·검찰,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검찰이 다 문제였지요.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은 검찰이축소·왜곡 수사한 정황들이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법정까지 오기는 왔지만 법원의 판결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 자체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또는 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절차에 있어서 원칙에 위배됐다라든지 확인된 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 적용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문제 제기를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 기판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해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입장과 심리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중심적인 판결을 해야 한다'이러한 판례가 이미형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표창원 위원 그렇다라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 충분히 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알려서 지금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같은 위력의 존재에 대해서, 그것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법리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사전에 하실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력과 위력 행사를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 표창원 위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 이 이미, '위력의 존재는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행사다'라는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담하다는 생각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여성들이 지난주에 2만 명이모여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판결과 관련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하는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은 희망적이라고생각해서 저희 여성가족부가 그런 토론에……

○표창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인데요, 장관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인데요, 과연 여성가족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확대된 여성단체냐, 확대된 페미니스트 그룹이냐, 확대된 여성학자 집단이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아닙니다.
- **○표창원 위원** 아니지요?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 **표창원 위원** 정부부처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 까

그러면 '일반사회에서 이러한 담론이 형성되니까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전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1심 판결이 있기 전에 지난해 대법 판결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 또 사법부

각 판사들께 서한을 발송하시든지 사법부에 어떤 간담회나 세미나들을 요청하시든지 해서 사전에 사법부의 성인지를 높이는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한 토론과 논의가 일어났을 때 그 토론과 논의의 장을 열어 주는 것이 여성가족부 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표창원 위원 예, 그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요, 마찬가지 입장인데 지금 그 루밍(grooming)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 지 않습니까? 이미 그루밍에 대해서 여성계 혹은 형사사법계에서 좀 더 진보적인 부분에서는 벌써 수년 전에 그루밍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성 일반보다는 청소년 아동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 논의가 되기는 했지만 이번의 1심 판결 과정에서 도 전문가 증인, 감정인에게 의견을 받았을 때 그루밍의 여지가 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사전에 했던 모든 말이나 행동들이 상대적 약자인 피해 자, 비록 성인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 정도로 볼 수 있는 관계 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했 어요, 재판부가. 이런 부분 역시 재판부의 독립성 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부 분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보다는 제가 이미, 미투 사건이라는 게....

○**표창원 위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 는 이유는 뭐냐 하면 BMW 화재 사건 아시지 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 **표창원 위원** 달리던 BMW에서 화재가 났습 니다. 그러면 국토부장관이나 정부나 대한민국은 '이것은 사기업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계약관계이 고 소비자와 자동차회사 문제니까 우리는 언급하 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표창원 위원 그 원인 중에 지금 추정으로 나 오는 것은 우리나라가 높인 환경기준에 맞지 않 는, 부합하지 못한 BMW 차량이 소프트웨어 조 작을 통해서 맞추려고 하다가 일어난 화재로 보 여집니다.

그러면 사법부에서 성범죄에 대한 그간의 높아 진 시민의식 그리고 피해자들의 용기 이런 부분 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판사들의 일반적인 형사사법 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하려다가 화재가 난 사건이랑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성가 족부는 대한민국 국토부나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처럼 이런 사법부의 잘못된 부분을 판결 그 자체가 아니라 사법부에 성폭력 특별전담부를 구 성하라라고 하든지, 이미 작년에 나왔던 이런 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충분히 제대로 인지하고 전 파하고 적용하라고 하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나 사법행정의 성인지 향상을 위한 노력들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제가 이미 대법원장님 찾아뵙고 첫째는 양형기준을 높여야 되고 두 번 째는 판결에 있어서 사법부의 감수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것 참으로 잘하신 거라고 보 고,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일반 재판은 대법원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1심 · 2심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일반 판사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법부는 성역이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태도는 이제는 좀 탈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최영애 전 성폭력상담소장이, 대한민국 성폭력 최고 전문가 중의 한 분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성 가족부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시면 '성폭력이나 또는 가정폭력 이슈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전부 다 업무를 넘겨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 스스로가 존재의 의의를 찾으시려면 좀 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아동 대상 학 대 등 피해자가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배하는 특성을 가진 사건, 그래서 법정에서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건, 그렇 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 쪽으로 가야 하는 특수한 사건 여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좀 더 전문성 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판결 이 나오지 않도록 평상시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 ○**표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원내대표가 되셨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축하드리는데요.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정의당 원내대표이신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 관련한 부분이 국민의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법안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 정책의 측면 그리고 이에 따른 성평등에 대한 의식의 전 환 등등의 부분으로 봤을 때 여성가족부의 역할 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우리 청소년·아동 등 에 대한 문제에 비추어봤을 때라도 여성가족부의 지위와 역할, 전체적인 위상이 제고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앞전에 예결특위를 하면서 그런 이야 기를 했어요.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 국회 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인데 결산은 도대 체 어떻게 하느냐? 수박 겉핥기식의 요식행위로 멈추는 것이 결산에 대한 국회의 인식과 태도다 그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결산과 관련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 보건복지위에서 결산 관련 보고를 받다 가 급히 질의 순서 때문에 왔는데 오늘 결산 심 사를 안 하시기로, 그것이 아직 소위의 구성이 간사 간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반짝 간사를 엊그저께 해 봤습니다만, 다시 어떻게 간사가 돼야겠습니다. 최소한 전체 위원들한테 상황 공유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소위 구성을 간사 간에 빨리 합의를 좀하셔 가지고 결산 관련한 질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이것이, 오늘부터 전체 예결특위 결산 질의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먼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 장님을 해서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성가 족위원회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하는 태도 부분 이 초반에 문제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같이 대처 했던 것은 단순히 공간 이전의 문제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는 여성가족위원회가 실제로 국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 고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와 답을 얻어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가 보다 그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결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숙**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여성가족위원회에 오시니까 원 내대표도 되시고 잘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 성 위원님들, 여성가족위원회에 오시면 다 잘된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할 때 예결소위 위원장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법안 심사소위원장만 하고 넘겼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 가 있어서 아마 오늘 오후에 결정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저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장관님, 안희정 사건에 있어서 이제 상급법원에서 또 판단이 내려지겠지만 재판 과정에 있어서 안희정 측 변호인 내지는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언론 보도에 노출이 되면서 그것이 심각한 2차 피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언론 보도의 내용과 추이에 대해서 장관님과 여성가족부는 좀 지켜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전희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심각하다고 생각 합니다.

○전희경 위원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저는 바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막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 다.

물론 각급 언론사에서 보도윤리라든지 각 사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시류에 따라서 자극적으로 기사를 노출시키기 위 해서 그런 지침이 수시로 어겨지고 있는데도 불 구하고 여성가족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언론사들과 함께 이런 성 범죄 · 성폭력 문제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 행태나 보도 수위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자 리를 만들고 실행에 옮겨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미 가이드라인은 만 들어서 6월에 배포했고요. 이것을 저희만으로 하 면 좀 영향력이 없을 것 같아서 기자협회랑 같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기자협회랑 같 이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성커뮤 니케이션학회와 현직 여성 언론인들과 함께 언론 에 의한 피해 사례들을 발굴하고 그와 관련된 토 론회도 개최하고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사실 언론사 안에서도 특히 여성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 다.

○전희경 위원 그러면 장관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미 가이드라인도 있고 또 그것을 여성가족부만 이 아니라 기자협회나 언론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이미 만들었는데도 불 구하고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그 가이드라인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오히려 취지가 무색할 정 도로 더욱 심각한 현상을 낳았다. 이후에 이런 유사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 똑같이 언론에서 계 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인터넷에 그 내용들이 계속 떠 있고 그것이 개인들이 퍼 가는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2차·3차 확산되고 있다, 그 런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미 벌어진 일 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꼭 언론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이버 댓글이나 악성 댓글을 통한 2 차 피해에 대해서는 발견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요. 경찰이 즉각적 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으로 경찰과 논의를 해서 지금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장관님 설명을 들어 보면 심각하 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 이, 시민들이 댓글이나 이런 걸로 2차 피해를 가 하면 그렇게 처벌할 수도 있고 바로 수사도 착수 가 됩니다.

그러나 언론기관들이 자극적으로 제목을 달고 일방적인 주장을 그렇게 여과 없이 변론 과정에 서 나온 이야기들을 기사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집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은 바로 이런 언론들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해당 기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기자들에 게 문제를 지적하고 언론사에 통보하는 노력을 저희가 모니터링 사업과 더불어서 앞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저는 폭풍우가 치고 있는데 여성 가족부가 '우산 펼치고 있으니 비 들이칠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정도로 들립니 다.

여성가족부에서 안희정 사건에 있어서 기사 내 용이 그렇게 자극적으로 흘러나올 때 여성가족부 장관의 목소리가 반드시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것이 즉각적으로 기사의 흐름과 기사의 정도에 반영이 됐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실 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자 정작용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 치들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범죄자 알리미 관 련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 아청법에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범죄자? 그런데 내가 학부모라 서 그 정보를 봤다, 그런데 성범죄자가 옆집에 산다, 그런데 그 옆의 이웃집에 혼자 사는 여성 이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여성에게 이 내용을 캡 처해서 보내 준다, '앞에 성범죄가 살고 있다'. 그 러면 장관님 이 학부모는 현행법상으로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처벌을 받습니다.

○전희경 위원 처벌을 받습니다. 옆집의 아가씨 가 위태위태해 보여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자지만 잠재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일대일로 알려 줘도 아청법상의 조항 때문에 이게 처벌 대상이 되거 든요. 그러니 넌지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밖에는 못 알려 주는 겁니다.

이것은 법과 현실의 괴리라고 생각해서 제가지금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여가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내용이,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 **○전희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혜숙**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질의의 내용을 보면 우리 여가위가 여 성가족을 위하는 데에는 여야가 없는 것 같습니 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께서 제안을하나 해 주셨습니다. 지금 법사위를 비롯해서 각급 상임위에 미투 관련 법안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촉구 기자회견을 하자고 했는데 간사간에 합의를 하셔서 합의가 되면 시간을 정해서우리 여성가족위원님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종명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8월 3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토보고서와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하여 심 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의 경우는 현재까지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오늘 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백 장관을 비롯한 여성가족부와 소속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 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 위원(17인)

김 현 아 송 기 헌 김 수 민 김 정 우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보 라 신 용 현 윤 종 필 이 종 명 유 민 봉 윤 소 하 전 혜 숙 전 희 경 정 춘 숙 제 윤 경 표 창 워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배 용 근 입 법 심 의 관 차 인 순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	관	정	현	백
차	관	$\circ$	숙	진
기 획 조	정 실 장	윤	ফ্র	식
청소년가족	$\circ$	기	순	
여 성 정	책 국 장	$\circ$	건	정
권 익 증	진 국 장	최	창	행
대 변	인	김	중	열
정 책 기	회 관	최	성	지
가 족 정	성 책 관	$\circ ]$	정	심
한국양성평등교	육진흥원장	나	윤	경
한국청소년활 이 사	동진흥원 장	0]	광	호
한국청소년상담 이 사 장 직		0]	창	ই
한국건강가 이 사	정진흥원 장	김	혜	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변	혜	정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18. 7. 26. 이양수·김정재·윤한홍·김성원· 정유섭·윤종필·김석기·김태흠·김도읍· 박명재 의원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18. 7. 26. 이양수·김정재·윤한홍·김성원· 정유섭·윤종필·김석기·김태흠·김도읍· 박명재 의원 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6. 이양수·김정재·윤한홍·김성원· 정유섭 · 윤종필 · 김석기 · 김태흠 · 김도읍 · 박명재 의원 발의)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18. 7. 26. 이양수·김정재·윤한홍·김성원· 정유섭 · 윤종필 · 김석기 · 김태흠 · 김도읍 · 박명재 의원 발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6. 이양수·김정재·윤한홍·김성원· 정유섭 · 윤종필 · 김석기 · 김태흠 · 김도읍 · 박명재 의원 발의)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6. 이양수·김정재·윤한홍·김성원· 정유섭 · 윤종필 · 김석기 · 김태흠 · 김도읍 · 박명재 의원 발의)

이상 6건 7월 27일 회부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18. 7. 27. 이양수·박덕흠·김성원·홍문종· 유기준 · 김명연 · 안상수 · 신보라 · 강석진 · 이만희 의원 발의)

7월 30일 회부됨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8. 7. 30. 박경미·송옥주·고용진·유승희· 신용현 · 백혜련 · 위성곤 · 윤일규 · 송기헌 · 김병관 의원 발의)

7월 31일 회부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8. 7. 31. 정부 제출) 이상 2건 8월 2일 회부됚